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15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편성 및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교무처 학사지원과) 02-970-6033

제정 2022. 10. 2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제54조제4호에 따라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마이크로디그리" 란 미래사회 및 산업 수요 변화를 대비하여 구성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, 보다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최소 단위의 실무형 단기 교육과정이다.
- 2. "주관학과(부서)" 란 마이크로디그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행정을 지원 및 운영하는 학과(부서)를 말한다.
- 3. "참여학과(부서)" 란 마이크로디그리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학과(부서)를 말한다.

제3조(유형 및 설치) ① 마이크로디그리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전공 교육과정 활용하여 전공 내 진로ㆍ취업 분야로 설정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
- 2.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 간 연계하여 새로운 실무 분야로 설정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
- 3. 2개 이상의 학과(전공) 및 타 대학과의 공유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 수준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정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
- ② 마이크로디그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공유대학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지정된 경우
- 2.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내 공모를 통하여 지정된 경우

- 제4조(과정 개설 및 운영)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주관학과 (부서)는 매 학년도 정해진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융합교육 과정위원회를 거친 후 교육과정통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승인한다.
- 1. 마이크로디그리 개설(신설/변경)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- 2. 주관학과(부서) 및 참여학과(부서)의 개설신청 심의결과와 참여교원의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
- ② 편성하는 교과목은 개설학과에서 정한 학년 및 학기에 따른다.
- ③ 마이크로디그리는 개설이 승인될 경우 최소 3년간은 운영을 유지한다.
- ④ 마이크로디그리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목 개설, 학생지도를 위하여 주관학과(부서)에 주임교수를 둔다.
- ⑤ 주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 강좌 개설을 주관하며 학생들의 원활한 교과목 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과정 폐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.
- 1. 과정별 이수 실적(개설 후 3년간)이 저조한 경우
- 2. 주관학과(부서)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폐지는 교육과정통합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총장이 승인한다.
- 제6조(교과목면성 및 과정 이수) 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별 교과목 편성은 21학점 이내의 전공 및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마이크로디그리는 주관학과(부서) 또는 참여학과(부서)의 교과목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 고유과목을 편성하거나 개설하지 아니한다.
- ③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자는 해당 마이크로디그리에서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④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별 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신청 전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신청 이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⑥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본교 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 주관학과(부서)에 인정할 경우 제4항에서 지정한 최소 이수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.
- 제7조(신청자격 등) ① 마이크로디그리의 신청자격은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이수학기가 7학기(단, 건축학전공은 9학기)를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한다.
- ② 마이크로디그리는 대상 학생의 소속 학과 및 허용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학생의 소속 학과 및 허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8조(이수신청 및 포기)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때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. ② 마이크로디그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 때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포기한다.
- 제9조(이수 중단의 사후 처리) ①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학생 중에서 졸업 사정 또는 개별 과정의 운영 종료 전까지 제6조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이수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수가 중단된 경우 이수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육과정을 개설한 주관학과(부서) 및 참여학과(부서)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한다.

- 제10조(이수표기) 졸업요건이 충족된 학생이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요건도 충족하였을 때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할 수 있으며, 별지제5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그 밖의 사항)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715호, 2022. 10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청자부터 적용하다.

마이크로디그리 개설(신설/변경) 신청서

마이크로디그리명					
주관학과(전공)			참여학과(해당시)		
[전공 개요] 개설 필요성 및 타당성					
	교과목명	교과목코드	개설학부(과)	학점-이론-실습	담당 교원
	교과목명 A	000000	○○○학과	3-3-0	홍길동
교육과정 편성	교과목명 B				
(최소 ㅇㅇ학점 이상 이수)	교과목명 C				
	교과목명 D				
	교과목명 E				
	교과목명 F				

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편성 및 운영 규정」제4조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개설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개설책임자 (서명 또는 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

※ 첨부서류

주관 학과(부서) 및 참여 학과(부서)의 회의록(참여교원 서명 포함)

마이크로디그리 폐지 신청서

마이크로디그리명						
주관학과(전공)		Ž	함여학과(해당시))		
폐지 사유						
	소속	직급	성명	소속	서명	성명
	학과명	교수	000	학과명	부교수	000
주관학과 및						
참여학과 교원 명단						
표현 정단						

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편성 및 운영 규정」제5조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폐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개설책임자 (서명 또는 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

※ 첨부서류

주관 학과(부서) 및 참여 학과(부서)의 회의록(참여교원 서명 포함)

[별지 제4호 서식]

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신청서

	성명	000	학번	0000000
신청인	단과대학	○○○대학	학부(과)	○○○학과
	전공	○○○전공	연락처	000-0000-0000

마이크로디그리 과정명	○○○ 마이크로디그리	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편성 및 운영 규정」제8조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이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

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포기 신청서

	성명	000	학번	00000000
신청인	단과대학	○○○대학	학부(과)	○○○학과
	전공	○○○전공	연락처	000-0000-0000

마이크로디그리 과정명	○○○ 마이크로디그리	마이크로디그리 승인학기	년도 학기
		이수학점 현황	과목 학점

취소사유		

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 편성 및 운영 규정」제10조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이수 포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

이 수 증

0 0 0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4조에 의하여 마이크로디그리(<u>과정명</u>)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수증을 수여함.

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○○박사 ○○○